

간사	의장	부총장
		

기획처 전략기획팀

2024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4년 4월 15일(월) 1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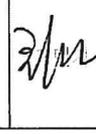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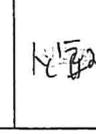
장 소 : HIT 2층 화상회의실

참석인원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 위원	교수평의원	5명	최성호, 임연욱, 이자영, 배백일, 최민기
	직원평의원	2명	박승원, 조윤정
	조교평의원	1명	신효정
	학생평의원	1명	백명숙
	외부평의원	2명	윤승준, 김태량
불참 의원	1명	이임성	
간 사	1명	송민혁(전략기획팀장)	

<회의 내용 >

1. 2023학년도 결산안 자문
2. 학칙 개정안 심의

대학평의위원회										
										

- 회 의 진 행 사 항 -

※ 간사(전략기획팀장)는 회의 정족수 이상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우선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근거법령 및 구성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평의원을 차례대로 소개한 후 안건 토의를 시작함

<제1호 안건 -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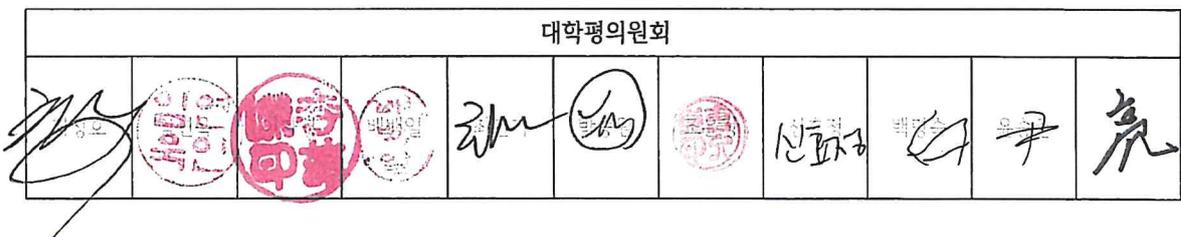
- 총무처 재무회계팀장으로부터 2023년도 결산안의 자산 및 수입총액은 1,510.6억원이고, 지출액은 672.3억원이며, 적립금 조성액은 5.7억원, 미사용차기이월금 832.6억원 등임을 설명함. 등록금 수입 현황, 건물 및 토지 현황, 적립금 현황, 보수 현황, 장학금 지급 현황, 미사용차기이월금 현황, 고정자산명세서 등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전기 증감사항, 집행 근거 등을 검토함.
- 최성호 의장은 발표 자료에 대하여 회의 이후 공유할 것을 요청하고, 재무회계팀장은 이메일 등 전달 방안을 고려하여 의원들에게 공유하기로 답변함.

<제2호 안건 - 대학 학칙 개정안 심의>

- 의장은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간사는 학칙 개정안의 주요 골자 및 취지에 대해 보고함.

1)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제3장 제6조, 제7조, 제6장 제21조, 제9장 제31조, 제48조)

- 윤승준 의원은 제4조의3 2항에 계약학과 조항이 있는데 별도로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 이에 간사는 해당 건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으로 계약학과 운영취지를 고려, 예외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여 학칙에 조항별로 명시하고자 함을 설명함.



- 제4조의3 2항을 그대로 존치하되, 조항별로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기로 함.
- 가. 제6조: ‘계약학과의 수업연한 및 조기졸업은 세부사항으로 정한다.’
- 나. 제7조: ‘단, 계약학과의 재학연한은 별도 세부사항으로 정한다.’
- 다. 제21조: ‘계약학과의 재입학은 별도 세부사항으로 정한다.’
- 라. 제31조: ‘단, 계약학과의 교과목은 별도 세부사항으로 정한다.’
- 마. 제48조: ‘계약학과의 학위수여는 별도 세부사항으로 정한다.’

2)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제13장 제64조)

- 최성호 의장은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 학점을 매학기 24학점, 연간 42학점으로 개정할 경우 총장 명의의 학위 수여가 의무사항인지 확인 요청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학위수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학위수여 요건)에 의거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학위수여 가능하며 의무사항 아님

3)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제9장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46조)

- 윤승준 의원은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46조에 문구의 주어 및 목적어를 넣어 내용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요청함.
- 가. 제33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본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나. 제33조의3: 이 경우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와 해당대학의 협약에 따른다.
- 다. 제46조: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타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 배백일 의원은 교과과정과 비교과교육과정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간사는 원격대학 평가인증에 따라 비교과 관련 조직 및 규정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함을 설명함.



- 최성호 의장은 교양교육과정 제청에 관한 업무 프로세스를 확인 요청함 → 최근 대학에
서의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대학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수
립해야 하는 상황임. 한양대학교의 ‘창의융합교육원’이나 연세대학교의 ‘교양교육연구소’
의 사례와 같이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본교의 경우 교육혁
신센터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개정안 임을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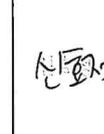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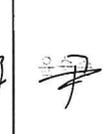
가. ② 본교의 교양교육과정은 교육혁신센터의 제청을 통해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이 정한다.

4)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제2장 제4조)

- 경영학부 인사조직 · 전략벤처학과의 존치기간 내용 삭제

○ 참석 의원들은 제2호 안건 학칙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함

<붙임 자료> 1. 2023 회계년도 결산안 별첨

대학평의회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원회

(2024학년도)

교수 평의원

최성호



교수 평의원

임연옥



교수 평의원

이자영



교수 평의원

배백일



교수 평의원

최민기



직원 평의원

박승원



직원 평의원

조윤정



조교 평의원

신효정



학생 평의원

백명숙



외부 평의원

윤승준



외부 평의원

김태량

